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롯데손해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과태료 20,720만원
직 원 등	자율처리필요사항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임원 겸직 보고의무 위반

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*하여야 하는데도,

*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배구조법') 시행령」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

롯데손해보험(주)(이하 '회사')는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외이사 2인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각 7차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지배구조법」 제11조(겸직 승인 및 보고 등)
2.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11조(겸직 승인 및 보고) 및 제30조(업무의 위탁)
3.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4조(임직원의 겸직기준)

(2) 설명의무 등 위반(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)

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,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·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(일명 '해피콜' 제도)해야 하는데도,

회사는 2020.3.11.~2024.7.1. 기간 중 '㉠보험' 등 65건(수입보험료 79백만원)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5조의2(설명 의무 등)
2.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42조의2(설명 의무의 중요 사항 등)
3. 「보험업 감독규정」 제4-35조의2(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)
4. 「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」 제2-34조의2(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 등)